

研究論文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남북 교류

하 문 식*

I. 머리말	VI. 남북한 문화재 관련 교류와 협력
II. 북한의 문화재 관련법 제정과 정비	VII. 맺음말: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문제점
III. 북한의 문화재 관리 전문기관	<참고문헌>
IV. 북한의 문화재 관리 체계	<국문요약>
V. 북한의 문화재 관리 실태	

I. 머리말

1945년 광복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 속에서 분단이 되었고, 이러한 냉전의 갈등 고리는 민족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근원이 되어 왔다. 그러다가 1980년대 후반부터 세계적으로 이념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 제한적이지만 중국, 러시아지역에 대한 문화재의 답사나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변화의 분위기는 1990년대 후반에 북한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되었다. 남북한의 화해는 여러 방면에서 시작되어 대립의 관계에 있던 기존 이해의 틀을 바꾸게 되면서 새로운 관계 개선의 변화를 촉진시켰다.

분단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서로 갈등과 대립의 입장에서 굳어져 온 견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역사 정체성과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이런 변화의 물결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공유한다는 인식

* 세종대학교 부교수, 고고학 전공(msha@sejong.ac.kr).

을 하게 되는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그동안 남과 북은 민족의 공동 자산인 문화재에 관하여 교류·연구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서로를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은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에 조성된 남북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념의 색깔이 가장 엷은 민족의 문화유산인 문화재를 통한 남북교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다. 분단 이후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 아래에서 문화재를 보존·관리하여 왔기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 하지만 어느 분야보다도 교류의 가능성이 높고 서로의 인식 차이를 좁히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문화재와 관련있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여기에서는 현재 북한의 문화재 관련법을 살펴보고 관리 현황을 파악한 다음 남북한 교류 방안에 대한 몇 가지 견해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북한의 문화재 관련법 제정과 정비

북한은 1948년 9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이 수립되기 이전에 문화재(문화유산)에 관한 법령을 제정하였다.¹⁾ 처음 제정된 법령은 일제 강점기인 1933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조선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을 참고하여 1946년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반포한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1946년 4월 29일)이다. 11조로 구성된 이 법안은 구체적인 세부 실천을 위하여 28조의 시행 규칙과 13조의 시행 수속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도에 ‘고적 보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또한 1947년 2월에는 북조선인민위원회 결정 제119호에 의하여 ‘북조선 고적 보존 위원회’가 창립되었다.

다음은 1948년 내각 결정 제110호로 「물질 문화 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1948년 11월 1일)을 제정하였다. 이 규정은 모두 8조로 구성되었고 역사와 학습적으로 귀중한 유적, 건조물, 회화, 공예품, 전적 등의 보존 관리에 관한 것이다. 이 규정에 따라 내각 직속으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하여 내각 결정 제58호인 조선물질 문화 유물조사 보급위원회에 관한 결정서가 채택되어 조선 물질문화 조사보존위원

1) 북한의 문화재 관련 법령에 관하여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종합 연구한 보고서가 있다. 박상철·김창규,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한국법제연구원, 1995) 참조.

회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원시사 및 고고학부, 미술 및 건축학부, 민속학부, 박물관 지도부, 총무부로 구성되었고, 내각의 문화선전성에서 담당하던 박물관에 대한 관리 지도 및 북조선 고적보존회에서 하던 업무를 맡게 되었다.

물질문화 유물 보존에 관한 규정이 채택되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북한지역의 문화재에 관한 보존 관리가 이루어졌으며, 한편으로는 법령의 의미를 지니는 교시(김일성)와 지시(김정일)가 있게 되었다. 1949년 10월 ‘민족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는 교시가 발표되어 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대한 기본 방향과 지침이 마련되었고, 1954년에는 내각 지시 제23호로 ‘문화 유물 및 천연기념물 보존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와 내각 지시 제92호인 ‘각종 건설 공사장에서 출토하는 유적 유물을 고고학적으로 처리할 데 대하여’가 내려져 한국전쟁 직후 복구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의 방향을 설정하였던 것 같다. 1958년 4월에는 고구려 유적과 유물의 발굴·보존에 관하여 ‘역사유적과 유물을 잘 보존할 데 대하여’라는 교시가 있었고, 1964년 9월 ‘역사유적과 유물 보존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할 데 대하여’라는 지시가 있어 발굴 대상 유적에 관한 성격 파악과 문화유물 보존 기관의 설립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²⁾

1972년 개정된 북한 헌법 제37조에는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호하고 그것을 사회주의 현실에 맞게 계승 발전시킨다고 명시되어 있다. 1985년 7월 11일 주석 명령 제35호로 지시된 ‘문화유적 유물 보존 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는 「문화유물 보호법」의 제정에 앞서 북한의 문화재 정책에 대한 기본 방침과 보호법의 기본 틀을 알 수 있으며, 국가 정책적 관점에서 문화재를 관리하고 민족 문화유산을 계승할 것을 강조하였다.³⁾ 특히 국가 검열기관, 검찰기관,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감독 통제기관들의 문화유적 유물 보존 관리에 대한 검열 감독 사업은 앞으로 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리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정무원(내각)과 인민무력부, 사회안전부 등 관련 기관에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한 점 뿐만 아니라 각급 행정기관, 연구기관, 경제 관련기관에게 각자의 기능

2) 장호수, 「북녘의 문화재 관리제도와 정책」,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 관리』(백산자료원, 2000), 195~198쪽.

3) 지병목, 「문화유물 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文化財』, 제36호(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44~46쪽.

에 맞는 의무를 분담한 것은 법 강화의 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북한에서 문화재 보존·관리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1994년 3월 24일 최고 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46호로 채택되고, 1999년 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문화유물 보호법」(앞으로는 「이 법」으로 함)이다.⁴⁾ 「이 법」은 1992년에 4장 19조로 구성되어 제정된 「역사유적과 유물 보호에 관한 규정」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문화재 관리의 기본법 구실을 하고 있는 「이 법」은 6장 52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의 제정 목적은 기본적으로 “문화유물 보호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문화 유물을 원상태로 보존하여 민족문화 유산을 옹기 계승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주는데 이바지한다(법 제1조)”라고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문화 유물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 크게 역사유적과 역사유물로 구분하면서 원시유적/성/봉수터/건물/건물터/무덤/탑/비석/도자기/가마터/쇠부리터는 역사유적에, 생산도구/생활용품/무기/조형예술품/고서적/고문서/인류화석/유골은 역사유물로 분류하였다.

문화 유물의 발굴과 수집은 문화유물 보존기관과 관련 전문기관만 계획에 의하여 할 수 있고 등록된 문화유물의 발굴은 내각 문화성(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국)인 중앙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 문화유물의 평가와 등록은 내각(정무원)과 중앙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에서 등급에 따라 정한다. 유적의 보존 관리는 원칙적으로 문화유물 보존기관과 해당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적의 복구와 개건은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 유물을 재현하는 것으로 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과 지방 정권기관에서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국에서는 문화재보호법에서 천연기념물과 명승지에 관한 것을 입법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북한은 독립된 규정과 법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⁵⁾ 1990년 「명승지의 보호 관리 및 리용에 관한 규정」과 「천연기념물의 보호 관리에 관한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규정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잘 보호·관리하고 이용하여 당의 자연보호 정책과 사회주의에 대한 우월성을 널리 선전하도록 하였다. 또한 나라의 자연 풍치를 아름답게 하고

4) 법률출판사(역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평양, 법률출판사, 2004), 333~340쪽.

5) 장호수, 「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統一과 國土』, 제15호(한국토지공사, 2005), 10~11쪽.

문화 정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199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64호로 채택되고, 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명승지, 천연기념물 보호법」을 기본으로 하여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을 관리하고 있다. 명승지와 천연기념물에 관한 근간이 되는 이 법은 4장 34조로 구성되었고 “명승지, 천연기념물의 조사, 등록, 관리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고 인민들의 문화 생활과 건강 증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법 제1조)”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또 명승지에는 산/바닷가/호수/폭포/계곡이, 천연기념물에는 동식물/화석/동굴/자연바위/광천 같은 것으로 범위를 정하였다.

조사와 등록은 명승지와 천연기념물 보호 지도기관이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 일반인이 이런 류를 발견하면 보호 지도기관이나 해당기관에 알려야 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즉시 현지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평가의 기준은 역사적 유래, 대상의 특성, 보존 가치 등이며 내각이 하도록 하였다.

III. 북한의 문화재 관리 전문기관

북한의 문화재 관리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먼저 관련 기관의 현황 파악과 그 역할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에서 문화재를 지도·관리하는 기관은 그 역할과 성격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 행정기관(내각), 전문기관 그리고 교육기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는 연구소·박물관·학회와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그 대개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연구소는 주로 문화재의 수집과 연구를 하며, 박물관은 이를 전시하면서 연구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또한 학회는 서로의 업무 연관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상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들 연구소와 박물관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1. 연구소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은 고고학연구소가 대표적이다. 이 연구소는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평양의 인민대학습당(1백화점) 근처의 승리 거리에 있다. 1952년 10월 9일 과학원 물질문화사연구소에서 출발한 이 연구소는 1957년 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개칭된 다음, 1964년 2월 17일 과학원이 사회과학원과 분리됨에 따라 사회과학원 소속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사회과학원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로 있다가 1969년 고고학연구소와 민속학연구소로 분리되었다.⁶⁾ 1970년대부터 북한의 문화재 발굴과 조사·연구 사업에 있어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며, 1980년대 김일성 종합대학의 인류진화 발전사 연구실이 개설되어 구석기 관련 유적을 조사·연구하기까지는 모든 발굴과 조사를 전담하게 되었다.

고고학연구소는 원시실을 비롯하여 6실로 구성되며, 연구 인력은 약 170명쯤 되고 이 가운데 고고학 전문학자는 8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⁷⁾ 고고학연구소의 연구 인력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사회과학대학 출신인 새로운 세대 즉, 30대 중반의 신진학자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신진학자들은 한국의 고고학 연구방법론이나 최근의 연구 성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류협력 방안 문제에 관한 주변 여건과 상황 판단을 위하여 적극적인 면이 많은 편이다.⁸⁾

고고학연구소는 북한의 현실적인 상황을 잘 반영하듯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유적 조사와 연구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 성과는 발굴을 완료한 다음 종합보고서를 간행하여 학계에 배포하여야 하지만 현재 북한의 경제적인 실정으로는 어려워 단위유적의 발굴보고서는 간행하지 못하고 있다.

2. 박물관

1945년 12월 1일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창립(개관)을 기점으로 박물관과 문화

6) 한창균, 「도유호와 북한 고고학」, 『조선원시고고학』(백산자료원, 1994), 327~408쪽.

7) 고고학연구소의 조직은 2006년 현재 소장(손수호, 고구려 고고학 전공) 아래 원시실(실장: 김성국), 중세실(실장: 리창진), 연대편년실(실장: 호만정), 자료실(실장: 강성태), 고동물 연구실(실장: 고광렬), 발굴대(대장: 차달만)로 이루어져 있다.

8) 하문식, 「북한의 유적 답사와 고고학계 연구 동향」, 『白山學報』, 제64호(백산학회, 2002a), 332~336쪽.

재 보존에 관하여 근본적인 틀을 만들게 되었다. 그 법적 근거는 「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 보존령」(1946년)으로 각 시·도에 고적보존위원회를 조직하도록 하였다.

1947년에는 신의주·청진·함흥·묘향산에 지방 역사박물관이 설치되었고, 1949년 9월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에도 역사박물관을 개관하였다. 그 다음 1952년에 개성 역사박물관이, 1954년에는 조선 미술 박물관이 설치되었고, 1955년 12월 1일에는 국립 사리원박물관을, 1956년 2월 10일에는 조선민속박물관이 개관되었다. 이렇게 지방의 주요 도시에도 역사박물관을 열게 됨에 따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1988년 9월 5일에는 개성의 고려박물관을 개관하였다. 이처럼 북한은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그 기능과 전시 성격에 따라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미술박물관, 혁명박물관, 특수 박물관으로 구분된다. 여러 박물관 가운데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의 대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⁹⁾

1945년에 설립된 다음 1977년 확장 개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동의 승리거리에 위치하며, 남쪽에는 조선 미술박물관이, 북쪽에는 조선 민속박물관이 있다. 박물관은 3층 건물인데 연면적은 약 15만㎡이며, 1층은 연구 및 관리실이 있고, 2~3층은 전시실이다. 19개의 전시실이 있으며 원시시대부터 3·1 독립운동까지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조직은 관장 밑에 부관장과 여러 연구실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학술실, 안내를 맡는 군중실(군중강사실 또는 교양실), 유물을 보존 관리하는 보존연구실(보존실, 미술실, 실험실, 미술제작실, 표구실), 청사 관리실(조직 계획실) 등이 있으며 직원은 약 100명이다.

이밖에도 1988년 개관한 개성 고려박물관을 비롯하여 사리원 력사박물관, 해주 력사박물관, 청진 력사박물관이 있다. 개성 고려박물관은 고려 성균관 건물을 부분적으로 개축하여 전시실을 만들었는데 주로 개성지역의 고려시대 유물을 중심으로 전시하고 있다. 또한 개성지역의 절터에서 수집된 탑과 비석이 야외에 자리하고 있다.¹⁰⁾ 사리원 력사박물관은 황북지역에서 수집된 유물을 주로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지역의 도자기(청자)유적에서 출토된 관련 유물을 특색있게 전시하고 있다.

9) 하문식, 「북한의 박물관」, 『博物館學報』, 5호(한국박물관학회, 2002b), 47~54쪽.

10) 장호수, 「개성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관리」,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경기도박물관, 2003), 73~90쪽.

3. 학회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수성이 잘 반영된 조직의 하나인 학회 활동이 활발하며, 학회를 통한 대외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학회의 구성원은 관련 연구자와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북한에서 학술 활동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학사(한국의 석사에 해당)와 박사학위의 심사와 수여, 학술 활동, 관련 분야의 연구 활동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기능 등이 있다.

북한의 학회는 2003년 12월 개편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인문사회과학회 분야에는 철학학회, 사회·정치학회, 경제학회, 언어학회, 교육학회, 민족고전학회, 문예학회(현대 음악과 현대 문학), 역사학회, 고고학회, 민속학회 등 10개 단체가 있다. 고고학회와¹¹⁾ 민속학회는 원래 고고민속학회였지만 2002년 분리되었다. 이 가운데 조선력사학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 안에 력사연구소를 두고 있다. 조선력사학회는 고구려·발해 분과 등 6개 분과를 두고 있다.¹²⁾ 그런데 북한의 인문사회과학회 분야에서는 학회지도국과 사회과학원 대외사업국에서 대외적인 활동을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4. 교육기관

북한에서 문화재와 관련있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고고학 강좌를 들 수 있다.¹³⁾ 고고학 강좌는 력사학부 내에 김일성동지 혁명 력사학 강좌, 김정일 동지 력사학 강좌, 조선 력사학 강좌, 세계 력사학 강좌, 민속학 강좌, 종교학 강좌와 같이 있다.

11) 고고학회는 현재 회장(손수호)을 비롯하여 부회장(남일룡, 김일성종합대 고고학 강좌장), 상무위원(리승혁, 문화보존지도국 처장, 리기웅, 문화보존지도국, 김경삼, 고고학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2) 조선력사학회는 고구려·발해 분과, 고대 분과(분과장: 조희승), 중세 분과(분과장: 김유철), 근대 분과, 현대 분과(분과장: 김성중), 세계사 분과(분과장: 안명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고고학 강좌에는 남일룡 강좌장(고대 성곽 전공)을 비롯하여 김영찬 교수(중세 성곽), 리영식 교수(고구려 고분), 리광희 교수(유물 분석) 등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 직속 기관인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은 대동강 문화권의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연구하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핵심적인 연구 기관이다. 이 연구실의 설립 배경은 김일성 종합대학 설립 30주년을 맞아 김일성이 방문하여 ‘인류진화발전사를 다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인류진화발전사를 확고한 물질 자료에 기초하여 해명할 데 대한 과업 부여’라는 교시를 전달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이후 이 연구실은 1970년대 후반부터 상원 룡곡 동굴유적을 비롯하여 황해도 랑천동굴, 독재굴, 화천동굴 등을 발굴하였으며 연구원인 박한덕은 랑천동굴 자료를 가지고 2002년 학사 논문(우리의 석사 학위)을 작성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황주 청파대 동굴유적을 98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다.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의 연구 경향 가운데 이전의 고고학연구소에서 하던 것과 다른 특이한 점은 종합적인 분석연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실의 보고 관련 논문을 보면 지질과 층위 분석, 화석 감정(인류화석/동물화석), 꽃가루 분석, 절대연대 측정(주로 열형광법과 핵분열 흔적법) 등 구석기 연구를 전문 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다.¹⁴⁾

한편 김일성 종합대학의 역사자료관에는 북한의 구석기 연구에 관한 새로운 해석의 자료가 전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남쪽 학계에서는 1950년에 시작된 옹기 서포항유적의 발굴조사 후 같은 지역에 층위를 이루고 있던 굴포리 구석기 유적을 1963년 4월부터 발굴하였다고 인식하고 있었다.¹⁵⁾ 그런데 1974년 9월에 개관한 김일성 사적관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1960년 8월 29일 김정일이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과 ‘우리나라 구석기시대의 존재 문제를 주체적 입장에서 고찰할 데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담화를 하고 난 다음 굴포리유적을 발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⁶⁾

이러한 사실은 향후 한반도의 구석기 연구에 대한 계기를 인식하는데 있어서 큰 시각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 분명하므로 한국 학계에서도 빨리 이런 문제에 관하여—한국의 구석기 학사—준비를 하여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4) 이러한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어 주목받고 있다.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조선 서북지역의 동굴유적』(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5) 참조.

15) 한창균, 「북한의 구석기유적 연구」, 『白山學報』, 제48호(백산학회, 1997), 5~31쪽; 한창균,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북한 고고학계의 동향과 시각」, 『韓國古代史研究』, 제25집(한국고대사학회, 2002), 7~8쪽.

16) 사적관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전시하고 있는데 특히 다음의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엮음), 『김일성종합대학의 임무에 대하여』(제1권)(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5).

IV. 북한의 문화재 관리 체계

북한의 문화재 관리 체계를 이해하고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살펴보기 위하여는 1994년에 제정된 「문화유물보호법」을 분석하여야 한다.¹⁷⁾ 북한에서는 전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모든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1. 문화재의 발굴과 수집

문화재에 대한 발굴과 수집은 「문화유물보호법」 제2장에 그 규정을 하고 있다.

발굴을 국가의 문화적 재보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규정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한 점(법 제10조)이 한국의 현황 인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발굴은 문화유물 보존기관과 해당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특히 등록된 문화유물(지정문화재)은 문화유적유물보존지도국인 중앙문화유물보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통제하고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일반인들이 유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중앙과 각 도·시·군 인민위원회의 관련 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련자는 곧바로 사업을 중지하고 현장을 보존하여야 한다. 또한 유물이 발견된 다음 관련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채 건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다(법 제13조). 이 법의 조항은 한국의 문화재 관리 현황과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지만, 건설공사나 토목공사 등 사업 시행 전에 예방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북한의 관련 전문가와 몇차례 토의한 결과 사회 통제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며, 사회 내부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유물이 발견될 경우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⁸⁾ 한편 문화재(역사 유물)의 수집은

17) 북한에서는 이 법의 홍보를 위하여 문화유산 관련 대중잡지인 『민족문화유산』을 통하여 5회에 걸쳐 법제 해설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그 비중을 짐작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 「법제 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해설(1)~(5)」, 『민족문화유산』, 창간호~제5호(조선문화보존사, 2001~2002) 참조.

18)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좋은 예는 2000년 6월 초 화대군 석성리의 도로공사 과정에 있었던 구석기시대 사람 머리뼈 발견이다. 이곳에서는 도로공사 과정에 필요한 포장용 돌을 채취하려고 화산

중앙과 각 시·도의 역사박물관을 비롯한 지정된 문화유물 보존기관만이 할 수 있으며, 신고하여 국가 소유로 된 유물은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평가하여 일정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4조). 이것은 일반인이나 단체가 개별적으로 유물을 소유하지 못하게 법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되고, 상속 이외의 경우에는 모든 유물이 국가 소유임을 밝히고 있다.¹⁹⁾

2. 문화재의 평가와 등록

문화유물은 역사적 의의와 조형예술적 가치에 따라 국보 문화유물, 준국보 문화유물, 일반 문화유물로 평가한다. 그리고 국보 문화유물과 준국보 문화유물 평가는 내각에서 하고 그 평가에 대한 등록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이, 일반 문화유물은 중앙문화유물보존지도기관에서 평가하고 등록은 각도인민위원회의 부서에 해당하는 지방문화유물 보존지도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제19조).

그런데 북한의 문화재 관리 체계에서 보면 지정문화재의 분류 체계인 유적과 유물을 평가하는 기준이 문화유물 보호법과는 약간 차이가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먼저 북한에서는 실무적으로 유적과 유물을 구분한 다음 유물은 국보급 문화유물, 준국보급 문화유물, 일반 문화유물로 평가하고 유적은 국보 유적, 준국보 유적, 지정 고적, 보존 유적으로 등급을 정한다. 지정 고적은 임시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의미에서 몇몇 유적이 그 대상인 것 같다. 예를 들면 은율 관산리 고인돌을 지정 고적 제98호로 지정하여 현재 표지석이 유적에 세워져 있다. 하지만 2006년 6월 북한의 문화재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이 유적은 현재 국보 유적 제84호인 것

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산에서 암석을 깨뜨리는 과정에 뼈가 발견되어 공사를 중지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되었다. 신고를 받은 고고학연구소는 곧바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사람뼈 화석 3인분을 찾게 되었다. 인류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원인(곧선사람)과 신인(슬기슬기사람) 사이에 해당하는 고인(슬기사람) 단계일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인류 화석 발견 지점의 용암을 열형광법과 고지자기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약 30만년 전으로 나타났다. 북한 학계에서는 이 사람뼈를 ‘화대사람’이라고 이름붙였다. 장우진, 「화산 용암 속의 화석 인류: 《화대사람》」, 『조선고고연구』, 제124호(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2), 2-7쪽.

19) 지병목, 앞의 논문(2003), 49~50쪽.

으로 확인되었다. 이처럼 지정문화재의 등급과 관련 지정 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지금까지 보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북한의 사회적인 현 상황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또 보존유적은 1994년 이후에 준국보 유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것 같으며, 아직까지 자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의 지정 문화재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부분적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현황 파악이 상당히 어렵다. 아울러 분류 체계에 있어서도 수시로 변화가 있다. 대표적인 예가 국보 문화유적 제1호이다. 현재 국보 제1호는 평양성이지만 얼마 전까지는 현재 국보 제4호인 대동문이 1호였는데 이것은 평양이 고조선의 중심지이고 고구려의 도읍지라는 역사적 정통성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처럼 문화재의 평가에 있어서 정치적인 의미와 사회적인 상황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를 참고하면 1990년대 초반(1994년 ?)에 이미 국보유적으로 지정되었던 기존의 자료를 통합하여(1호~139호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지역별 구분을 한 다음 재지정을 하였다는 내용을 북측 관계자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지정된 유적은 국보 유적이 180여 곳, 준국보 유적은 1000여 곳으로 파악되지만, 자연재해로 인하여 상당히 많은 유적들이 파괴되거나 멸실된 것 같다. 또한 국보 유적이거나 준국보 유적(보존 유적)의 지정 현황을 보면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연구 분위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1970·80년대는 북한에서 고구려 유적에 대한 연구와 조사가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 고구려 유적이 많이 지정되었고, 1990년대에는 단군릉이 발굴·개건됨에 따라 평양이 문명의 발상지이고 국가 형성의 중심지라는 대동강문화론이 제기되면서 고인돌유적, 고대 성터, 마을터 등이 국보 유적이거나 보존 유적으로 많이 지정되었다.²⁰⁾

3. 문화재의 보존 관리

1985년 7월 11일 주석 명령 제35호로 지시된 「문화유적유물 보존 관리 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는 문화재 관리를 국가 정책적인 면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할 것

20) 하문식, 「대동강문화론에서 본 북한 학계의 연구 동향」, 『단군학연구』, 제14호(단군학회, 2006), 5~33쪽.

과 민족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조한 것이며, 뒤이어 1993년 12월 최고인민회의의 결정으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가 9개항으로 정리되어 의결되었다.²¹⁾

북한 당국의 이러한 관심 속에 해마다 4월과 11월을 ‘문화유적 애호월간’으로 지정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 위원장이 역사유적과 역사 유물에 대한 보존 관리 문제를 언급하면서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해서 근로자들이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교양하라”는 지시에 따라 ‘사회적 담당 관리제도’를 만들고 ‘문화유적 애호월간’이 제정되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동원되는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되고 있다.²²⁾

문화유물 보호법에 따른 보존 관리는 먼저 문화재를 특성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원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22조). 이에 따르면 유물의 보존 관리 주체는 역사박물관, 민속박물관, 각 지방의 문화유적관리소인 문화유물 보존기관과 역사 유물을 보관하고 있는 기업소, 단체, 일반인으로 되어 있다. 국보급 유물에 대하여는 좀더 엄격한 관리 지침을 적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보존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화유물 보존기관이나 해당 기관에서는 실측을 한 설계도면과 사진 자료를 만들어 영구히 보존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35조). 이것은 예기치 않은 재난에 대비함은 물론 북한의 문화재 관리에 있어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는 개건·복구에 이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확보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역사적·예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진귀한 유물은 중앙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의 제작 승인을 받아 복제품(모조품)을 만들어야 한다(법 제31조).

한편 문화재 보존을 담당하는 기관이나 기업소, 단체는 역사유적의 구조를 변경시킬 수 없지만, 중앙문화유물 보존 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는 박물관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문화유물 보존과 관련되는 목적에 이용할 수 있다(법 제29조·제30조). 실제로 북한에서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한 대표적인 역사유적으로는 보현사, 동명왕릉, 개성 성균관 등을 들 수 있다. 묘향산에 있는 보현사에는 다라니석

21) 편집위원회, 「해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제6호(조선문화보존사, 2002), 17~18쪽.

22) 허태선, 「모두 다 문화유적 애호 월간사업에 적극 펼쳐 나서자」, 『민족문화유산』, 제2호(조선문화보존사, 2001), 12~13쪽; 오양열, 「참고자료 :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연구』, 제6권(명지대 북한연구소, 2003), 172쪽.

당(국보유적 제59호), 관음전(국보유적 제57호), 보현사비(국보유적 제144호), 팔만대장경고를 비롯하여 조계문, 해탈문, 대웅전, 4각 9층탑, 8각 13층탑 등 상당히 많은 문화재가 있다. 그런데 이곳은 1976년부터 김일성의 특별한 관심으로 복원 사업이 진행되었고 주변에 국제친선전람관이 위치하고 있어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북한에서는 보현사라는 역사유적 그 자체를 ‘묘향산 력사박물관’이라고 부르고 있다.

4. 문화재의 복구개건

한국에서 문화재 보존 관리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북한에서는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문화유물을 재현한다는 의미에서 복구개건이라는 개념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이러한 복구개건은 1993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6차 회의에서 결정된 ‘민족문화유산을 옹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²³⁾

북한에서 문화재를 복구개건할 때에는 당성, 계급성, 역사 연구의 주체를 강조하는 역사주의적인 원칙 등 상당히 교조적인 것을 기본으로 하며 일정한 방향을 정한 다음 추진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권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고조선, 고구려, 발해, 고려 유적을 대대적으로 복구개건한 점이 주목된다. 그런데 북한의 문화재 복구개건 사업에서는 1990년대를 기점으로 앞 시기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복구개건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980년대까지는 사업 추진에 앞서 먼저 발굴 및 기초자료 조사 등 학술조사를 아주 철저히 시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여 왔지만 1990년대부터는 단군릉, 동명왕릉, 개성의 태조 현릉에서 보는 것처럼 원상복구 차원보다는 우수한 문화전통을 실물로 보여주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형시키고 있어 상당한 문제점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²⁴⁾

23) 정영훈, 「북한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 정책」,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10집(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90-294쪽.

24) 정영훈, 「최근의 단군 관련 인식 혼란과 과제」, 『단군학연구』, 제7호(단군학회, 2002), 279-280쪽.

V. 북한의 문화재 관리 실태

북한의 문화재 관리 실태를 보면 현재의 사회적인 상황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박물관의 전시 현황을 보면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지방 역사박물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19실의 전시실을 갖추고 있으며, 선사시대(구석기)부터 3·1독립운동 시기까지의 유물을 기본으로 하고 사진 자료, 그림 자료, 도표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면서 전시하고 있다. 1실은 「김일성 주석 다녀가신 방」이라 하여 김일성·김정일·김정숙 관련 혁명 사적 일람표를 중심으로 전시되어 있다. 2실~3실은 「원시실」, 4실~5실 「고대실」, 6실~9실은 「중세-고구려실」, 10실은 「중세-백제·신라·가야실」, 11실 「중세-발해실」, 12실~14실은 「중세-고려실」, 15실~17실 「중세-리조실」, 18실 「근세실」 그리고 19실은 「3·1독립운동 관련 자료실」로 대부분 김형직 혁명 활동 주요지역도 및 사진 판넬 등이 전시되어 있다.²⁵⁾

이렇게 전시 면적이나 전시 공간에 비하여 유물이 적고, 사진·그림의 판넬로 전시된 점이 특이하며 상당히 단조로운 느낌을 준다. 특히 진열장 속의 중요한 유물이 상당 부분 빠져 있는 점이 관찰되었다.

지방역사박물관(신의주, 청진, 사리원, 해주, 원산, 함흥 등)의 경우는 현 실정이 열악하기 그지 없어 사실상 개점 휴업한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박물관이 소재한 담당 지역의 유적 조사는 물론 이미 조사된 유적의 보고서 작성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15여 년 이상 되었으며, 전시 시설은 물론 전시 유물의 현황 파악도 잘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주와 사리원의 역사박물관은 전시 및 소장 유물 가운데 도자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이러한 유물의 행방에 관하여 북측 관계자들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문화재의 관리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발굴 조사 과정이나 완료한 다음의 원상 복구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예산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현실정에서는 더욱 심각한 것 같다. 1990년대 후반 대동강문화권의 설정에 따른 관련 유적조사의 일환으로 평양 주변지역인 상원·강동의 고인돌 유적

25) 하문식, 앞의 논문(2002b), 50~53쪽.

이 대규모로 발굴되었다. 유적의 현지를 답사한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상원 장리 고인들의 경우에는 덮개돌을 옮기지 않은 상태에서 무덤방을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상원 방울피와 매미골, 평양 만경대 고인돌유적은 발굴 조사가 끝난 다음 원상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것도 현 상황에서 북한의 발굴 여건을 쉽게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여겨진다.²⁶⁾

발굴 조사한 다음 유적의 복원(복구개건)에서도 관리 상태의 문제점은 곳곳에서 관찰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성곽의 복원이다. 대성산성(국보유적 제8호)은 고구려의 대표적인 유적으로 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가 진행되었고 많은 유물이 출토된 북한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대성산성은 조사를 한 다음 부분적으로 복원을 하였는데 남쪽의 안학궁터 쪽인 소문봉 성벽은 복원을 하면서 고대 성곽의 관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근에 채석된 돌을 곳곳에 그대로 사용하였음이 관찰된다. 또 평양성(국보유적 제1호)의 경우에도 을밀대(국보유적 제19호) 쪽으로는 복원을 하여 원상태를 보여주고 있지만, 높다란 성벽만 강조하였을 뿐이지 고구려 성곽의 중요한 구조인 치(雉)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복구하여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재의 도굴 행위와 해외 밀반출 문제이다. 199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 당국에서 외화벌이를 위하여 문화재의 해외 반출을 어느 정도까지 묵인한 상태에서 거래가 있어왔던 것 같다. 이때 사업의 주체는 군부대 위주의 외화벌이 사업소이고 거래된 문화재는 골동품의 성격이 강한 고려자기, 조선 백자 등 주로 도자기 제품이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 문화재에 대한 거래가 제재되고 특히 밀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게 되자 중국쪽의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밀반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밀반출에 따른 문화재의 희소성이 있게 되자 도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몇가지 점으로 볼 때 북한 문화재에 대한 국내 거래와 유통 관계를 통제할 제도적인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 남북한 문화재 교류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을 것이고, 국내의 합법적인 문화재 상거래도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문화재 관리 실태에서 특이한 점은 해외 불법 반출 문화재의 반환운동

26) 하문식, 앞의 논문(2002a), 327~330쪽.

이다. 북한은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반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이 반환운동은 일본에서 조총련 관련 기구를 중심으로 1980년대에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지금까지 300여 점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²⁷⁾

VI. 남북한 문화재 관련 교류와 협력

최근 남북한이 문화의 동질성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문화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 정책의 입장에서 점진적 확대를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의 남북한 문화재 교류 현황을 살펴보고 교류협력의 몇가지 방안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문화재 관련 교류 현황

문화재 관련 교류는 크게 유물이나 자료의 전시, 북한 문화재에 대한 공동 조사와 실태 파악, 세계문화유산 지원사업, 외국의 지원과 공동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1) 전시

북한의 문화재나 관련 자료를 한국에서 전시한 것은 2002년 12월과 2004년 4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주최한 것을 비롯하여 2005년 고려대학교와 서울역사박물관의 고구려 유물 전시, 2006년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대구박물관의 국보급 유물 전시 등이 대표적이다. 민화협은 중앙일보와 공동으로 2002년 12월 6일부터 2003년 3월 5일까지 ‘특별 기획전 고구려!—평양에서 온 고분벽화와 유물’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²⁸⁾

27) 문화보존사·조선중앙력사박물관, 『해외 및 귀국 동포들이 보낸 력사유물』(평양: 문화보존사·조선중앙력사박물관, 1991).

28) 《민화협: 보도자료》, 2002년 12월 5일자. 이 전시회에는 실물 크기로 복원된 고구려의 벽화 자

다음으로 민화협에서는 2004년 4월 6일~6월 20일까지 ‘고구려를 통한 민족의 동질성 회복 : 고구려 문화전’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개최하였다.²⁹⁾ 이 전시회는 중국의 동북공정에 따른 일반인의 고구려에 대한 관심이 많은 시점에 이루어졌기에 시기가 좋았던 것 같다.

한편 고려대학교 박물관에서는 개교 100주년 기념 행사의 일환으로 2005년 5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라는 주제로 특별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 전시회에는 북한 전역에서 출토된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고구려의 국보급 유물이 15점 포함된 60여 점이 출품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남북 역사학자협의회와 공동으로 2006년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북녘의 문화유산-평양에서 온 국보들’의 특별전을 개최하였다.³⁰⁾ 이번 에 개최된 특별전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 소장 유물 90점이 전시되었다. 이 유물 들은 구석기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통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국보 유물 50점과 준국보 유물 11점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개최된 북한 문화재의 전시회 가운데 가장 다양한 종류와 시기의 유물이 왔고, 문화재의 등급도 상당히 많이 고려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 공동 조사와 실태 파악

북한지역의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와 실태 파악에 관하여는 그동안 고구려연구 재단을 비롯하여, 토지박물관, 국립문화재연구소, 불교계 등에서 하여 왔다. 고구려연구재단은 2005년 평양 일대의 벽화무덤 등 고구려 관련 유적의 조사를 진행 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 이어 2006년에는 안학궁을 시굴 조사하였다.

2005년의 조사는 북한의 사회과학원 및 문화유적유물 보존지도국과 남북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7월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평양과 안악 일대의 벽화무덤인 진파리 고분군, 덕흥리 벽화무덤, 수산리 벽화무덤, 강서 삼묘, 안악 3호분, 태성리 3호분을 하였고 성곽은 대성산성과 평양성 그리고 백두산 정

료와 안학궁과 정릉사에서 출토된 기와, 귀면와 등 240여 점이 전시되었다. 고구려의 벽화 자료 는 평양의 만수대창작사 예술가들이 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9) 전시된 유물과 자료는 고구려 유물 41점, 실물 크기의 벽화무덤 5기, 벽화무덤 자료 60여 점, 고 구려 복제 유물 86점 등이었는데 이들 자료는 2002년의 전시 자료와 대부분 비슷하였다.

30)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삼인, 2006).

계비의 원위치에 대하여 이루어졌다.³¹⁾ 이것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고구려 유적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향후 남북 학술교류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2006년 조사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민화협의 협조를 받아 김일성종합대학, 사회과학원, 문화유적유물 보존지도국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번의 시굴 조사는 안학궁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성벽, 건물터, 무덤, 출토 유물(기와) 조사 그리고 측량 조사를 같이 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건물터는 기단부 안팎의 토층 관계, 무덤은 건물터와의 정확한 관계 파악을 위한 실측(측량)조사, 기와는 조선중앙역사박물관과 김일성종합대학에 소장되어 있는 안학궁 출토품을 모두 조사하였고 성벽은 김일성종합대학에서 1958년부터 1971년까지 조사한 기존의 단면 조사에 대한 확인과 성벽의 구조 문제에 주안점을 두었다.

토지박물관에서는 2004년 4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개성공업지구 1단계 사업지역인 개성시 봉동읍 일원에서 중앙특구개발 지도총국의 도움을 받아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개발 대상인 약 100만 평에 대하여 문화재 지표·시굴·발굴 조사를 실시하였다.³²⁾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되는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이러한 문화유적의 조사는 앞으로 북한지역에서 남북공동 개발 사업이 진행될 때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문화재를 보존 관리하는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문화재청은 2005년 11월 개성 역사유적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남북 역사학자협의회와 같이 ‘개성역사지구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남북공동 학술토론회’ 및 유적 답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에는 4월 19일부터 5월 2일까지 ‘북한 고구려 고분군 남북공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는 5월에 평양과 주변지역의 고건축물에 대한 실측조사를 하였으며 7월 실시할 예정이었던 개성 만월대유적의 공동 발굴 조사는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무기 연기되었다. 고구려 벽화무덤의 실태 조사는 북한 소재 고구려 벽화무덤 16기중 8기와 벽화가 없는 무덤 2기 등 10기가 대상이

31) 고구려연구재단,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고구려역사재단, 2005).

32)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남·북 공동조사 보고서』(토지박물관 학술조사 총서 제23집, 2005).

었다.³³⁾ 이번 조사에서는 그동안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었던 진파리 1호분과 4호분, 호남리 사신총이 관련 전문가들에게 개방된 점이 특이하다.

이밖에도 금강산의 신계사와 개성 영통사에 대한 복원 사업이 한국의 관계 당국과 불교계의 지원 아래 추진되고 있다.³⁴⁾ 금강산 4대 사찰 가운데 하나인 신계사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이 2004년 11월에 실시되어 발굴조사를 한 다음 대웅전, 만세루, 요사채 등을 2006년 11월에 복원·낙성하였다. 이 사업은 조계종 발굴단에서 중심이 되어 진행하였으며, 남북 사회문화 교류 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영통사의 복원은 1999년 대한불교 천태종에서 기와 10만 장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2003년 단청 보수 지원이 있었다.

3)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지원

북한은 그동안 문화재에 관한 몇몇 사항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국제 교류활동을 하여 왔으며, 1983년 “문화재 불법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 금지 협약”, 1998년 “세계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에 가입하였다.³⁵⁾

2004년에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에서 관할하는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고구려 벽화무덤이 등재되었다. 등재 목록에 올라 있는 무덤은 평양 용산리지역의 진파리 1호 무덤을 비롯한 15기, 평양 호남리지역의 호남리 사신 벽화무덤 등 19기, 평양 토포리의 4기 등 모두 38기이다. 한편 북한은 뒤이어 개성 역사지구(문화유산)를 비롯한 평양 역사지구(문화유산), 금강산과 주변의 역사지구(복합유산), 묘향산과 주변의 역사지구(복합유산), 구장동굴(자연유산), 칠보산(자연유산) 등 6곳의 유적을 세계유산의 잠정 목록에 등재하여 놓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세계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한국위원회에서는 북한의 이들 유적이 성공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³⁶⁾

33)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자료관》 참조.

34) 《한국일보》, 2004년 4월 8일자.

35) 장호수, 앞의 논문(2005), 19~20쪽; 지병목, 앞의 논문(2003), 47쪽.

36) 김동욱·조옥연·김성준, 『개성역사지구』(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북한문화유산관련자료집 1, 2004).

4) 외국의 지원과 공동 조사

북한의 문화재에 대한 외국 전문 관련기관의 공동 연구와 지원에 관하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현재까지 파악된 외국 학술기관과의 공동 연구는 1963년 중국 요령성지역의 고조선과 고구려 유적을 발굴하기 위하여 조중공동고고학발굴대(朝中共同考古學發掘隊)를 구성하여 요동반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1980년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고구려문화전, 1986년 일본 관련 학자들과 공동 개최한 고구려문화 좌담회, 1988년 독일 관련 고고학자들과 토론한 선사시대~중세 고고학의 연구 토론회 등이 있다.

2000년대에 들어와 북한은 황해북도 연탄지역을 중심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유적에 대하여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은 2002년 8월부터 일본 후지방송사와 일본 고구려연구회의 재정적인 지원으로 연탄 송죽리지역의 고구려 벽화 무덤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³⁷⁾

2. 문화재 관련 교류 협력 방안

북한과의 문화재 분야 교류는 지속적이고 점진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먼저 서로의 부담이 적고 교류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 문화재라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기본적인 연구 방법이나 자료가 유적이거나 유물을 1차 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대상이 이데올로기나 주장을 넘는 실증적인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먼저 문화재 관련 자료의 전시회를 공동으로 기획·개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민화협, 한국방송공사 등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오고 있지만, 주체의 선택이 한정되고 이벤트식의 일회성 전시로 마무리되고 있어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한다. 실제로 필자가 참여하여 주관한 남북한 고인돌 사진 공동전시회는 예상 밖의 성과를 거두었던 것 같다. 2002년 9월 26일부터 평양의 윤이상음악연구소(평양 국제 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이 전시회에는 한국과 북한의 중요 고인돌 사진을 각각 50점씩 진열하였는데 북한의 관련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37) 하문식, 앞의 논문(2002a), 339쪽.

둘째는 중요 문화재에 대한 복제품을 상호 교환 전시하는 문제이다. 일부분적이지만 현 단계에서 북한의 국보급 유물이 제한적으로 한국에서 전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의 실정으로 볼 때 상당히 많은 소요 경비와 전시 부담을 안고 진행되고 있어 여러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북한에서 문화재 전시 관련 유물을 선택할 때 상당 부분은 복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면 이 사업은 서로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는 한국측의 문화재 관련 조사 보고서와 중요 유적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여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측에 전달되는 우리의 문화재 관련 보고서는 개별적으로 일부 전해지는 매우 제한된 상태다. 북한의 전문학자들과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한국측의 최근 연구 경향이나 성과에 대한 것을 질의하면 북측의 자료실에서 관련 자료를 구하여 보았다고 하지만, 관련 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보면 부분적으로 전달된 일부 자료만 열람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넷째는 북한의 발굴보고서 발간을 지원하는 일이다. 북한의 문화재 연구에 있어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고고학연구소의 현 실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연구 분위기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으며 발굴 조사도 이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발굴 조사를 완료한 다음 연구 과정을 거쳐 보고서를 작성하여 놓았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발간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은 북한의 고고학 연구를 상당히 침체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인 것으로 여겨지며, 정부 당국이 남북교류협력법에 의한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사업으로 지원을 하면 북한 고고학의 발전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선사유적의 공동 조사와 학술토론회의 개최 문제다. 선사고고학은 학문의 성격상 국가 형성 이전의 유적이나 유물이 연구 대상이기 때문에 남북교류에 있어 역사고고학보다 수월성이 있다. 따라서 현재 남북한 학계에서 서로 의견이 대립하는 역사분야보다는 서로의 합일점을 찾기가 쉬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민족과 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남북한 관련 학자들이 서로의 이해 관계를 벗어날 수 있는 선사유적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발굴조사를 하면서 교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자료 교환과 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무엇보다 교류 대상의 당사자를 구체화하면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북한측과 교류를 진행하는 대상이 여러 기관과 개인으로 분산되어 있기에 접촉 당사자들과 관련하여 많은 잡음과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와 관련된 여러 정보 및 자료를 통합하여 공유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위하여 남북한의 문화재 관련 교류를 주관할 학회가 필요한데 최근 한국고고학회에서 남북 학술교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남북교류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앞으로 교류에 관하여는 여러 기관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조직의 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상당히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남북 사회문화교류 협력기금을 적극 활용하면 효과적인 추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VII. 맺음말: 남북교류에 있어서의 문제점

지금까지 남북한의 문화재 공동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하여 북한의 관련법과 문화재 관리 전문기관, 그리고 문화재 관리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또한 최근까지 진행되어 온 문화재 관련 교류 현황과 자료교환·교류협력에 관한 몇 가지를 파악하였다.

최근 주변의 여건 변화에 따라 남북한의 교류관계에서 문화재에 관한 것도 일정 부분 그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교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북한 지역에서 도굴된 문화재의 한국으로 반입 문제다. 사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은 1980년까지만 하여도 외화벌이의 중요한 수단으로 문화재(골동품) 거래를 활성화하였다. 특히 이러한 문화재의 판매와 거래는 주로 중국 연변이나 단둥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진 이러한 문화재의 상당한 부분이 도굴에 의한 것이고 일부에서는 모조품까지 제작되어 유통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의 골동품 유통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문화재의 해외 반출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외화벌이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개성, 평안도 지역에서 권력기관의 비호아래 도굴과 밀반출이 성행하고 일부 전문가도 참여하여 그 가치와 진품여부를 감정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진행된 문화재 관련 남북교류 관계를 보면, 북한의 특수한 체제와 이념 문제는 물론 주변 정세에 따른 학문외적인 상황 논리가 큰 영향을 미쳐 이런 것이 실질적인 남북교류에 있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강하게 작용하여 왔다. 실제로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개성 역사유적 남북공동 발굴조사(만월대 발굴), 개성공단 부지 조성지역 문화재 조사, 고려청자 관련 조사 사업 등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문화재 관련 교류가 전면적으로 중단되었다. 이렇게 학문외적인 상황에 따라 이데올로기의 영향이 열은 문화재 관련 교류도 중단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남북교류 협력의 추진이 정치적인 논리에 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일시적이고 자의적인 남북교류보다는 남북고위급 회담의 의제로 설정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류협력의 방안이 보다 적극적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남북한의 교류에 있어 북한의 파트너 문제다. 2000년 남북공동선언 이후 상당히 많은 분야의 인사들이 남북 교류를 희망하였고 실제로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재를 비롯한 학술 분야에서도 북한의 여러 기관과 교류 내지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재정문제가 뒤 따른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남북교류가 추진된 다음에는 항상 잡음이 생기고 그 여파가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되곤 하였다. 북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에 지금까지 기관별 또는 위원회 중심으로 추진하던 교류관계의 당사자들을 정리하여 단일화하였다. 북한학자들에 따르면 사회·문화 분야의 교류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에서 전담하도록 북한 내부에서 정리가 된 것 같다.

기존의 남북교류에서 생긴 여러 문제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렇게 되면 무엇보다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인 교류의 목적이 퇴색될 가능성이 많다. 이 문제는 파트너인 한국의 당사자에게도 정리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관계당국에서 관련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 고구려연구재단, 『평양 일대 고구려유적』. 서울: 고구려연구재단, 2005.
-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자료관》.
-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서울: 삼인, 2006.
- 김동욱·조옥연·김성준, 『개성역사지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북한문화유산관련자료집 1, 2004.
-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여음), 『김일성종합대학의 임무에 대하여』(제1권).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85.
- 문화보존사·조선중앙력사박물관, 『해외 및 귀국 동포들이 보낸 력사유물』. 평양: 문화보존사·조선중앙력사박물관, 1991.
- 박상철·김창규, 『北韓의 文化財保護關係法制』.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1995.
- 법률출판사(여음),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법전』. 평양, 법률출판사, 2004.
- 오양열, 「참고자료: 북한의 문화재 정책과 남북 교류·협력 방안」. 『북한연구』 제6권, 명지대 북한연구소, 2003.
-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 『조선 서북지역의 동굴유적』.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출판사, 1995.
- 장우진, 「화산 용암 속의 화석 인류: 《화대사람》」. 『조선고고연구』, 제124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2002. 2~7쪽.
- 장호수, 「북녘의 문화재 관리제도와 정책」. 『북녘의 고고학과 문화재 관리』. 서울: 백산자료원, 2000.
- 장호수, 「개성의 문화유산 현황과 보존·관리」. 『고려시대 개성과 경기』. 용인: 경기도박물관, 2003.
- 장호수, 「북한의 문화재 보존 관리 체계」. 『統一과 國土』 제15호, 한국토지공사, 2005.
- 정영훈, 「북한의 민족문화유산 계승, 발전 정책」. 『한국의 정치와 경제』 제10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287~354쪽.
- 정영훈, 「최근의 단군 관련 인식 혼란과 과제」. 『단군학연구』 제7호, 단군학회, 2002, 279~280쪽.
- 지병목, 「문화유물 보호법을 통해 본 북한의 문화유산」. 『文化財』 제36호,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44~46쪽.
- 편집위원회, 「법제 해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유물보호법 해설(1)~(5)」. 『민족문화유산』 창간호~제5호, 조선문화보존사, 2001~2002.
- 편집위원회, 「해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주석명령 제35호 《문화유적유물 보존관리사업을 강화할 데 대하여》」. 『민족문화유산』 제6호, 조선문화보존사, 2002, 17~18쪽.

- 하문식, 「북한의 유적 답사와 고고학계 연구 동향」. 『白山學報』 제64호, 2002a., 332~336쪽.
- 하문식, 「북한의 박물관」. 『博物館學報』 5호, 한국박물관학회, 2002b, 47~54쪽.
- 하문식, 「대동강문화론에서 본 북한 학계의 연구 동향」. 『단군학연구』, 제14호, 단군학회, 2006, 5~33쪽.
-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개성공업지구 1단계 문화유적 남·북 공동조사 보고서』. 성남: 토지박물관 학술조사 총서 제23집, 2005.
- 한창균, 「도유호와 북한 고고학」. 『조선원시고고학』. 서울: 백산자료원, 1994, 327~408쪽.
- 한창균, 「북한의 구석기유적 연구」. 『白山學報』 제48호, 백산학회, 1997, 5~31쪽.
- 한창균, 「한국의 선사시대에 대한 북한 고고학계의 동향과 시각」. 『韓國古代史研究』 제25집, 한국고대사학회, 2002, 7~8쪽.
- 허태선, 「모두 다 문화유적 애호 월간사업에 적극 펼쳐 나서자」. 『민족문화유산』 제2호, 조선문화보존사, 2001, 12~13쪽

국문 요약

남과 북은 2000년 6월에 개최된 남북정상회담과 뒤이은 6·15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그동안 형성되었던 냉전의 갈등 고리가 풀리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는 여러 방면에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최근의 이러한 남북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북한의 문화재 관리와 그에 따른 남북교류 방안에 관한 것이다. 남과 북은 분단되면서 서로 다른 체제에서 문화재가 보존·관리되어 왔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러나 문화재는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이념의 벽을 뛰어 넘어 교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문화재 관리에 있어 기본이 되는 「문화유물 보호법」을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문화재의 발굴과 수집, 문화재의 평가와 등록, 문화재의 보존 관리, 문화재의 복구 개건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현재 북한의 문화재 관리 정책의 기본 방향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은 북한의 문화재 관리 전문기관인 연구소, 박물관, 학회, 교육기관 등의 현황과 그 역할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고학연구소는 북한의 문화재 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의 문화재 관리 실태에 대한 분석 결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내부의 북

잡한 여러 사정 때문에 유적의 발굴과 박물관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남과 북이 공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민족의 문화유산을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남과 북은 문화재의 전시, 공동 조사, 자료 교환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다. 이것은 문화의 동질성을 회복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 투고일 : 2007. 1. 4.

● 심사완료일 : 2007. 2. 27.

● 주제어(keyword) : 문화재(cultural property), 문화유물 보호법(the law of th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남북교류(Interchang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